

의안번호	2215255
의 퇴 인	염태영의원
회 답 일	2025.1.27.
추계번호	25B7063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5조제1항 (관리비용 등의 지원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(<u>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</u>)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85조제1항 (관리비용 등의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의무화¹⁾하고 있

1) 안 제33조의2(재난긴급알림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-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상황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등(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재난 상황,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(이하 이 조에서 “재난정보등”이라 한다)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알림시스템(이하 “재난긴급알림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입주자등의 재난정보등 수신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 2. 입주자등에게 수신되지 아니한 재난정보등의 재송신에 관한 사항
 3. 입주자등의 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연락 가능한 수단 및 입주자등의 차량 소유에 관한 정보의 확보에 관한 사항
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통한 재난정보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

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그런데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,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의 기준, 방법, 내용 등이 불확실하며,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향후 이를 구축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재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, 이를 참고할 수 있음([참고자료] 참조)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-
- 5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
 -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에게 홍보·안내 및 교육하여야 한다.
 -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등을 입주자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공동주택 재난긴급알림시스템 주요 지원 사례

자료: 지방자치단체 사업공고

- 경기도 안양시: 2026년 재난알림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사업
 - 지원근거: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
 - 지원대상: 「주택법」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,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 - 지원내용: 재난알림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의 90% 이내

- 경기도 시흥시: 2026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(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)
 - 지원근거: 「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
 - 지원내용: 단지 내 공용시설 개보수 항목 중 하나로 '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구축' 비용 지원
 - 지원규모: 총예산 4억 3,600만원 범위 내, 소요 비용의 50~70%, 단지별 상이

- 충청남도 천안시: 2025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
 - 지원근거: 「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
 - 지원내용: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지원
 -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특화 알림
 - 주차안심번호를 활용한 신속 알림 및 운영 비용 지원
 - 지원규모: 총사업비 약 1억원(시범사업)